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세상에 대항한 라합 II (여호수아 2:1~24)

이종윤 원로목사

III. 믿음으로 라합은

라합의 믿음은 신약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11:31)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니라”(약2:25,26).

1. 라합은 믿음으로 목숨을 건 위태로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영하고 숨길 수 있었다. 여리고는 좋은 도시가 아니었다. 군인들의 주둔지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라합은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이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라합은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했다(5절). 라합이 이처럼 위험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2.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의 과거, 자기 백성과의 인연을 끊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경우를 생각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라합의 입장은 동족들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과거를 접어두고 자기 백성과의 인연을 끊었다. 라합에게는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이 있었다.

3. 라합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했다.

라합은 유대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설 자리는 육신의 백성이 아니고 영적 형제,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야 할 것을 알았다.

라합은 그의 국적을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것이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 중엔 라합같은 신앙이 없었다. 라합은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이 되었다. 라합은 후에 유다지파와 남자 살몬과 결혼했다. 그들의 아들이 보아스요, 보아스는 모압이 롯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마침내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결국 라합은 이등시민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이는 믿음으로 산 라합이 받은 상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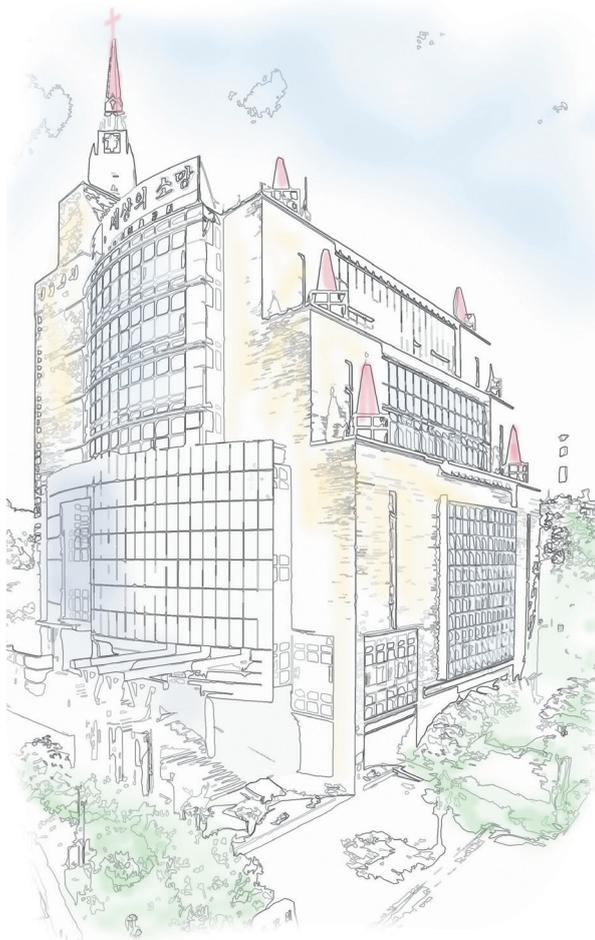
IV. 붉은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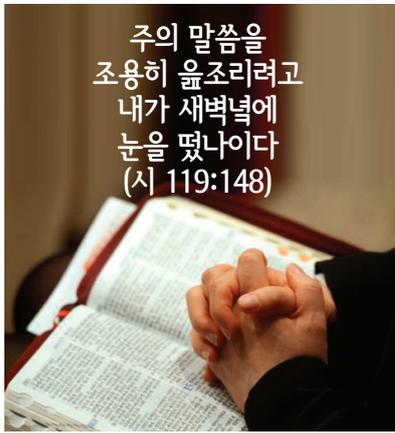
라합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표한다.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은 도시가 점령될 때 그녀와 그녀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정탐꾼들에게 받는다. 붉은 줄을 창에 달아매어 약속의 표시로 삼고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수2:17-18).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아벨의 피부터 갈보리의 피까지, 특히 출애굽기 시 율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붉은 줄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족과 우리 삶에 칠해져 있는가? 세상에 대항한 라합처럼 불경건하고 속된 세상문화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여리고처럼 망할 것이다.

우리로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입으로 전해야 한다. 라합의 집이 붉은 줄을 매어 구원을 얻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라합보다 나은 것은 우리에게 이미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섰던 라합처럼 우리의 죄악 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삶을 살자.





새벽기도회 정상화

4월 9일(월)부터 월요일~토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시편 46:5)
 그 동안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들려오던 새벽기도회를 정상화하여 4월 9일(월)부터 월~토 새벽 5시 30분에 드린다.

새벽시간에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기도제목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많이 참석하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

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복구

접속주소는 www.iseoulchurch.or.kr

박노철 목사측은 3월 12일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당회의 결의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홈페이지로 변경하였다. 이에 멀티미디어(부장 송인권 장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약 3,500여명의 홈페이지 회원들과 성도들이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될 것을 우려하여 임시 도메인(iseoulchurch.or.kr)을 개설하여 기존의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복구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복구된 서울교회 홈페이지는 당분간 일부 기능(회원가입, 카페)이 제한되니 이점 성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탈사이트에서 기존의 서울교회 도메인은 박노철 목사측 홈페이지로 연결되므로 "대치동 서울교회" 또는 "iseoulchurch"로 검색하여 본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바란다.



교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8일	주일	삼하 12-13		잠 8-13	
4월9일	월	삼하 14-16		잠 14-19	
4월10일	화	삼하 17-19		잠 20-24	
4월11일	수	삼하 20-22		잠 25-31	
4월12일	목	삼하 23-24		전 1-12	
4월13일	금	왕상 1-2		아 1-8	
4월14일	토	왕상 3-4		사 1-7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유동훈/윤지연 안선희 김광태 황선희 윤성남 이종일/박종숙 한상준 민의랑 노송성/이영옥 김현중 최임수/노인숙 박정자 심우진 박정에 이철민/이종균 양춘경 최광성 신동기/오광현 이선희 정수길 서민애 박동우/백승경 송정윤 무명 1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유·초등부(유년부 부장 : 장윤기 집사, 초등부 부장 : 김혜인 집사)는 지난 주 부활절을 기념하여 반별 활동시간에 만든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대치역에 나가 전도를 하였다.



박노철 목사 측의 장로임직 효력 정지 및 당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되다!

박노철 목사 측의 15 장로 임직 효력 정지 / 15인이 참석한 당회 개최나 개최 허용 금지 박노철 목사 측의 3.19 임시당회 결의 효력 정지

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지난 4월 2일, 서울교회 노문환장로 외 16인이 제기한 **박노철 목사 측 장로임직 효력 정지 및 당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노철 목사는 작년 5월 자기들끼리 임의로 선출한 장로의 임직을 무기한 보류하라는 총회재판국의 권면과 임직을 하지 말라고 하는 3월 4일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월 18일 불법 장로 임직을 강행하였고, 바로 다음날 강남의 모처에서 불법 당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1. 채무자 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의 폐지에 관한 결의
2. 채무자 교회의 사무국장 유태서 등 직원들을 해임하고 그들 대신 다른 직원들을 임명하는 결의.
3. 채무자 교회의 종전 부목사들 전부(서명철, 장석남, 조원영)를 해임하고 그들 대신 다른 부목사들을 새로 청빙하는 결의.
4. 채무자 교회의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된 예금 50억 원 중 일부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
5. 항존직(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에 관한 결의.
6. 서울강남노회에 파송할 장로 총대 선출에 관한 결의. 끝

위 안건들은 당초 공개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가처분재판 때까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은 이외에 어떤 안건이 추가로 결의되었는지 모른다.

이에 서울교회에 노문환 장로의 16인은 장로임직 효력 정지 및 당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민사 51부는 이를 인용하였다.

이 날 재판정에서 **박노철 목사**는 3월 4일 민사 51부의 판결에 대해 **‘3월 4일만 피하면 아무 때나 장로임직을 해도 된다’**고 하는 법해석을 유명한 법조인들이 해주었기에 장로 임직을 했다고 하는 말을 해서 방청객들과 판사를 실소케 했다.

본래 자기들만의 불법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였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박노철 목사 측이 이처럼 매번 법을 어기면서 막장으로 치닫는 길만 걷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동원된 용역들을 대연히 새신자로 등록하고 청년부로 둔갑시켜 교회에 상주케 하고 있으니 서울교회의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역행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 상태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일방이 자신에게 유리하

도록 당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를 대폭 증원하게 되면 기존에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의 의사를 배제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지교회 내부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인 당회의 권한을 형해화 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여 그간 박노철 목사 지지장로 확보를 위해 앞장서서 장로 선출 공동의회까지 지시하여 준 강남노회의 오류와 불법을 정확히 지적, 일침을 가했다.

교단의 노회와 총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게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 모두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 문제 뒤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또 잠시 잠깐 후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할 수 있을까?

서울교회는 불법 용역들의 상주로 예배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상해를 입고 있다. 박노철 목사는 하루 빨리 불법 용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내보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토록 유린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20402 장로임직효력정지 및 당회개최금지 가처분
채 무 자	1. 박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8. 판결에 따른 불복
별지 2	결의 목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교회의 안식년제규정의 폐지에 관한 결의 2. 채무자 교회의 사무국장 유태서 등 직원들을 해임하고 그들 대신 다른 직원들을 임명하는 결의 3. 채무자 교회의 종전 부목사들 전부(서명철, 장석남, 조원영)를 해임하고 그들 대신 다른 부목사들을 새로 청빙하는 결의 4. 채무자 교회의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된 예금 50억원 중 일부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 5. 항존직(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에 관한 결의 6. 서울강남노회에 파송할 장로총대 선출에 관한 결의. 끝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가 2018. 3. 18. 별지 목록 1 기재 사람들에게 대하여 한 장로임직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박노철은 별지 목록 1 기재 사람들을 당회원으로 참여시키는 당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위와 같은 당회의 개최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별지 목록 1 기재 사람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강남노회에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장로총대로 파송하거나 위 사람들에게 대하여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장로 지위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2018. 3. 19.자 임시당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2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